

專擔機關에 韓國包裝開發研究院 再指定

포장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 개정고시 < 산업지원부 고시 제 2000-33호(3.24) >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포장 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범위)

- ①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포장개발 지원사업
 - 2. 포장기술개발 지원사업
 - 3. 제1호내지 제2호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한 사업
 - 4. 기타 산업지원부 장관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포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조 (포장기술발전심의회)

- ① 포장기술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기타 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포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심의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둔다.

제4조 (전담기관)

- ① 산업지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개발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3. 개발사업 수행의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
 4. 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성과활용의 촉진
 5.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지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 시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산업지원부장관과 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회)

- ①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과제의 선정·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포장기술 전문가로 포장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전담기관내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개발위원)

- ①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 (이하 "개발위원"이라 한다)는 포장분야의 전문가로 개발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써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② 개발위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비의 관리
 3. 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 (참여기업)

당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2. 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4. 기술료를 징수하는 개발사업의 기술료의 납품
5. 관계법령의 준수

제8조 (개발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연도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사전수요조사의 실시)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 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발사업의 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공고된 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개발사업 또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방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개발사업과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이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검토·심의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
 3.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가능성
 4. 개발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5. 기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가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당해 개발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결과를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발사업자 선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발사업 신청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개발사업비 계상)

- ① 개발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서 신청시 개발과제에 소요

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을 계상하거나 전 담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다라야 한다.

1. 인건비는 포장기술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개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별도로 정한 직급별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참여인원수 및 참여율을 계상하되, 동일 개발자가 다수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외주가공비,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또는 자료 및 시장조사비), 제작비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의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출연금의 지원정도)

- ① 기술료를 징수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개발과제의 유형과 개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한다.
- ②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원하거나 지원비율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 ①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리 규정에 정한 서식에 의해 전 담기관의 장과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개발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지원대상자가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에게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포장산업 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전 담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출연금의 지급)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전 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위원에게 과제별로 개발사업비를 지급하되 과제별 세부 지급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 ① 개발위원은 제1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개발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개발위원은 개발비 지급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협약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

며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이한 개발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경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⑤ 개발사업비는 개발사업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 사업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의 장이 당해 개발사업의 연속적인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⑥ 협약당시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개발사업비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별로 1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평가 및 활용)

- ① 개발사업자는 당해 개발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개발위원 및 참여기업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대하여 재검토하고 평가위원회의 재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은 장의 매 사업연도별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의 목록, 개발사업 결과보고서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체,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기술료의 징수)

- ① 전담기관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공으로 평가된 것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30%를 해당 개발사업 지원대상자로부터 정책 기술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기술료를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은행도 약속어음 만기일은 최종 평가결과 통보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균등분할이어야 한다.

제17조의 3 (기술료의 사용)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정액 기술료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포장 또는 포장기술개발사업에의 출연
2. 기타 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에의 출연
3.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 사업에의 출연

제18조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

- ① 개발위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관리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위로 하였을 경우에는 기 교부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해당 개발위원에 대하여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개발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위원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1회에 한해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 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개발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개발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개발사업 수행중 발생된 특허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과 기자재, 연구시설 등의 정부출연금 지분은 제17조에 의한 개발사업 완료시가지는 개발위원 소유로 하되, 개발사업 종료후에는 참여기업 소유로 한다.

제20조 (관리운영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예산비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별 기획,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유지의무)

심의회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 전담기관 및 개발위원, 참여기업의 개발자 등이 개발사업에 관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제재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자가 개발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산업발전법령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정부 또는 이를 환수하거나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포장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4조 (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도 포장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 공고

<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0-49호(3.24) >

1. 사업목적

-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포장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포장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증진 및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포장개발을 지원
- 포장기술분야의 전문자를 활용하여 개발성공 가능성 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포장기술 개발을 지원
- 포장기술 개발결과 실용화가 가능한 포장제품에 대하여 산업기반기금(포장분야 고부가가치화사업)과의 연

계 추진

2. 지원범위

가. 지원분야

- 포장재 생산·포장기계 생산 및 포장재 사용업체를 상호 연계한 국내제품 또는 수출제품에 대한 포장의 신기술개발·물류합리화·라인자동화 및 상품의 원가절감으로 수출경쟁력과 부가가치 향상이 가능한 공산품, 농축수산품, 전통식품 등의 포장개발 분야로
-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포장기술
- 기능성 포장, 포장 신기술, 환경친화성이 있는 포장기술

- 유형개발 효과가 높은 포장기술
- 포장표준화 및 포장공정자동화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포장기술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포장기술개발이 필요한 농·수·축산·임업 단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30대 대기업은 제외(협약체결일자 기준)

다. 우선지원대상

- 포장개선을 통해 매출증가 및 수출증대 효과가 큰 상품의 제조기업
-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중소기업청,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추천한 유망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3.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1,500백만원

나. 지원기간: 2000. 12. 31까지

다. 업체당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지원한도

- 기술료 징수과제 : 총 개발비용의 2/3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기술료란 기술료 징수과제로 선정되어 개발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30%를 3년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임

- 기술료 미징수과제 : 총 개발비용의 75%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사업기간 : 6개월이내

4. 지원방법 및 절차

- 전담기관인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개발위원”으로 등록한 포장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등 성공 가능성성이 높은 업체의 포장 및 포장기술개발을 지원
- 포장 및 포장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업체는 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포장개발연구원에 제출

○ 포장기술개발 지원대상업체 선정과 지원규모 및 개발위원 연계는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이 개발타당성을 검토한 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개발위원 선정·연계 기준
 - 지원대상업체가 원하는 자로서 개발위원 자격을 갖춘 자
 - 기술개발 대상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 포장 및 포장기술개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포장개발연구원, 지원대상업체 및 개발위원간 협약을 체결하여 포장 및 포장기술 개발을 지원

5. 개발지원금의 지급

- 한국포장개발연구원은 지원대상업체 및 개발위원간 협약체결 후 개발지원금의 60%를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사업결과의 평가 후 별도절차에 따라 지급
- 정부예산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업체의 포장기술개발 분담금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함

6. 제재조치

○ 지원대상업체 또는 개발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활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신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7. 접수기관 및 접수방법

가. 접수마감 : 1차 2000. 4. 30, 2차 2000. 6. 30. (개발자금 미소진시는 한국포장개발연구원장이 3차 접수 기간을 정하여 별도 공고)

나. 접수처 : 한국포장개발연구원 포장개발연구부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미주빌딩 7F

(우 150-010)

- 전화 : 02) 3775-0567(대)

- FAX : 02) 761-3771

- 인터넷 : <http://www.kpd.re.kr>

※ 접수는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도 가능